

2019년 고양시청소년진로센터 1차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

2019년 고양시청소년진로센터 1차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공고하오니 유능하고 참신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바랍니다.

2019. 12. 20.

고양시청소년진로센터 센터장

1. 채용예정 분야 및 자격기준

□ 채용예정 분야 및 인원

직 종	업무분야	채용인원	담당업무 및 근무조건
기간제 근로자	진로업무	1명	○ 근무시설: 고양시청소년진로센터 ○ 주요업무: 진로체험지원, 행정업무 보조 등 ○ 근로개시일: 2020.1.13.(월) ○ 근무일: 주40시간(월~금 09:00~18:00) ○ 신분: 계약직(기간제근로자) ○ 보수조건: 월2,087,910원(고양시 생활임금 기준)
	진로상담 공간운영	1명	○ 근무시설: 백마역 청소년진로상담공간 ○ 주요업무: 청소년 진로상담공간 운영 보조 ○ 근로개시일: 2020.1.13.(월) ○ 근무일: 주40시간(화~토 10:00~19:00) ○ 신분: 계약직(기간제근로자) ○ 보수조건: 월2,087,910원(고양시 생활임금 기준)

※ 업무사정에 따라 근무일 및 근무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휴일/공휴일에 근무할 수 있음.
※ 재단 공무원 등 계약직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운영 할 수 있음.
※ 취업지원대상자 및 취업보호대상자는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우대

□ 자격기준

직 종	업무분야	자 격 기 준
기간제 계약직	진로	○ 관련업무 상근 경력자 우대(청소년 수련시설 및 진로센터) ○ 청소년지도사 ,청소년상담사, 직업상담사 자격소지자 우대
공통사항	○ 주소지, 성별 제한 없음 ○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○ 채용결격사유 및 재단 공무직등 계약직 근로자관리규정 제15조(결격사유) 및 해당되지 않는 자 ○ 취업지원대상자 및 취업보호대상자는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우대	

□ 채용결격사유

- 「아동복지법」 제29조의 3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
-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
- 고양시청소년재단 공무직 등 계약직근로자 관리규정 제15조(결격사유)에 해당되는 자

고양시청소년재단 공무직 등 계약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15조

제15조(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7.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횡령, 배임의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따라 간음 또는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9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10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11. 재단의 사업과 영리적 거래관계에 있는 자
12. 청소년 관련법 또는 규정을 위반하였던 자

2. 채용방법

□ 전형 및 심사기준

○ 1차 (서류심사) : 응시자격 요건의 적합성 심사

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

○ 2차 (면접심사)

면접심사 기준(100)
전문성 (30), 창의성 (20), 자발성 (20), 성실성 (15), 헌신성 (15)

○ 최종합격자 결정

- 최종합격자는 면접시험 심사위원 점수를 평균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 순으로 결정
- 동점자 발생 시 면접점수 우수자, 연소자 순으로 합격 처리
- 합격자 개별통지(홈페이지 공고 및 유선연락)
- 최종합격자가 등록포기, 결격사유 등의 이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, 차순위자(예비합격자)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할 수 있으며, 예비 합격자의 임용 대기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개월까지로 함

3. 채용일정 및 접수방법

구 분	추진 일정	비 고
채용공고	2019.12.20.(금)~12.30(월)	
원서접수	2019.12.20.(금)~12.30(월)	이메일 또는 방문접수
서류심사합격자 발표	2020.1.2.(목)	서류전형 합격자 개별유선 또는 문자서비스 통보
면접심사	2020.1.6.(월) 예정	
합격자 발표	2020.1.7.(화) 예정	합격자 개별유선 또는 문자 서비스 통보
채 용	2020.1.13.(수) 예정	결격사유 확인 시 합격 취소

※ 상기일정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.

○ 제출서류

- 응시원서 1부 ※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생년월일만 표기

- 자기소개서 1부
- 경력증명서 등 응시원서에 포함되어 있는 증빙서류
 - ※ 증빙서류가 없는 이력사항은 인정불가(기간 내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)
- 개인정보 수집. 이용동의서 1부 (응시자 전원)

◆ 최종합격자 추가서류 : 주민등록등본 1부, 신분증 사본 1부, 급여통장 사본 1부
 병역사항 해당자에 한하여 병역포함 주민등록 초본 1부.
 청소년지도사, 청소년상담사, 직업상담사 자격증 사본 1부.
 (위 준비서류 중 별도 기한이 없는 서류는 최근 3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.)

○ 접수방법 : 이메일/방문접수 중 택 1

- 이 메 일: gyjinro06@naver.com 문의 031-995-9551
- 방문접수: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633번길 25(토당청소년수련관) 2층
 고양시청소년진로센터사무실
- ※ 2019. 12. 30(월) 18:00 도착 분에 한함

4. 기타 유의사항

-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응시서류의 누락, 미비, 기재착오, 지원 자격 미 충족자의 응시 또는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- 관련분야 근무경력 인정 여부는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(경력 또는 재직증명서)를 기준으로 서류전형에서 심사하며,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- 고양시청소년재단에서 동일일자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응시할 수 없습니다.
- 해당 채용예정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,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채용신체 검사,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.
-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, 결격사유 등의 이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, 차순위자(예비합격자)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으며, 예비합격자의 임용 대기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개월까지로 합니다.
- 본 공고내용 및 일정은 진로센터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, 기타 문의 사항은 고양시청소년진로센터(☎ 031-995-9551)으로 연락바랍니다.

[제출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]

1. 고지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제6항에 따른 것으로 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(전자우편 제출 및 최종합격자 제외)는 기 제출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.
2. 수련관 채용공모에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2020년 1월 7일부터 2020년 4월 15일 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재단에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제출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.
3. 제출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'제출서류 반환신청서'(붙임서식)를 작성하여 팩스 (031-995-9559) 또는 이메일(gyjinro06@naver.com)로 제출하면,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리며, 이 경우 등기우편 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(접수여부 확인 필수 ☎031-995-9551)
4. 재단은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0년 4월 15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, 그 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

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[별지 제3호서식]

채용서류 반환청구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
청구인	성명	수험번호
주 소		
반환장소 (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)		
반환청구서류		
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
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 (서명 또는 인)

고양시청소년진로센터장 귀하

공지사항

- 1.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2.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,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.
- 3.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.